

문서번호 : 유리 2009-159 호

2009.08.20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 담당부서장

제 목 : 계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다음과 같이 계약 및 투자설명서가 변경되어 변경된 계약,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해당펀드

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투자신탁 1[주식]

유리글로벌노르딕증권투자신탁[주식]

유리명품 VISTA 글로벌증권투자신탁[주식]

유리오일머니말레이증권투자신탁[주식]

유리이머징뷰티말레이인도네시아증권투자신탁[주식]

유리 L/S+CTA 사모증권투자신탁[DLS-파생형]

유리 Wine 신의물방울증권투자신탁[주식]

유리글로벌스몰뷰티증권투자신탁[주식]

유리 퀄리티컬렉션 해외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유리 퀄리티컬렉션 국내증권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2. 정정 내용

- 해외펀드 및 재간접펀드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(T+1 → T+2)

- 이익분배 부분(계약 제 33 조)에서 이익금이 없는 경우 분배유보 내용(소득세법 시행령 개정)을 추가

	변경전	변경후
제25조(판매가격)	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<u>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(17시 경과 후 금전 등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</u>	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(17시 경과 후 금전 등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</u>
제33조(이익분배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.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수익증권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1.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 &lt;개정 2009.08.27&gt;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을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.</p>

3. 시행일 : 2009년 8월 27일

- 별 첨 : 1. 신탁계약서 1부.  
 2. 투자설명서 1부.  
 3. 간이투자설명서 1부. 끝.

유 리 자 산 운 용 주 식 회 사  
 흥세일사업본부장 오 창 균



수 신 처 : 굿모닝신한,우리투자,한화,SK,현대증권,브릿지,대신,동양증권,NH,키움,부국증권,한국투자,이트레이드,삼성생명,하나은행,농협,기업,대구,우리은행,한양증권,금호증권, IBK 투자, HMC 투자증권, 리딩, 부산, 하이투자,